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
정기재무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강 원 도
[감 사 관 실]

【일련번호 : 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 ♪♪♪♪♪

【시행년도】 2014~2015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재단 이사회 운영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이사회 운영 현황

구분	개최	안건	비 고
계			4회 미보고
‘14년 제1차 임시이사회	서면	심의 1건(♥♥♥♥♥규정 일부개정) 보고 1건(2013년 기금 운용현황)	
‘14년 제2차 임시이사회	서면	심의 3건(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 확정 등)	
‘14년 제3차 임시이사회	서면	심의 1건(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14년 제4차 임시이사회	회의	심의 3건(2013년 재무회계 결산 등) 보고 1건(제3차 임시이사회 서면의결 사항)	제1차, 제2차 서면의결사항 미보고
‘14년 제5차 임시이사회	서면	심의 4건(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등)	
‘14년 제6차 임시이사회	서면	심의 1건(2015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계획)	
‘14년 제7차 정기이사회	회의	심의 3건(2015 세입세출예산 등) 보고 1건(제6차 임시이사회 서면의결 사항)	제5차 서면의결사항 미보고
‘15년 제1차 임시이사회	서면	심의 8건(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등) 보고 1건(임원 변동)	
‘15년 제2차 임시이사회	서면	심의 5건(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등)	
‘15년 제3차 임시이사회	회의	심의 4건(2014년도 재무회계 결산 등) 보고 2건(제2차 임시이사회 서면의결 사항 등)	제1차 서면의결사항 미보고
‘15년 제4차 임시이사회	서면	심의 5건(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등)	

나. 2015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 선정 현황

구분	신청단체	신청사업명	지원액 (천원)	이사회 의결여부	임원 직무 관련 여부	비 고
계	2개 단체		17,500			
전문	◆◆◆◆ 문학 협회(☆☆☆)	2015 통권 제15호 강원민족문학집	5,500	2015년 제1차 임시이사회 ('15.2.5.~2.6.) 서면심의 시 ★★ ★ 및 ★★ ★ 이사 의결 참여	있음	민예총회장 ★★ ★ 재단 당연직 이사
활성화	◆◆◆◆ (★★★)	2015 강원민족예술인대회	4,000		있음	“
“	◆◆◆◆ (★★★)	제11회 문화예술인 해외교류	2,000		있음	“
“	◆◆◆◆ (★★★)	2015 강원민족예술지 발간	3,000		있음	“
“	◆◆◆◆ 금토	강원지역문화정보지 문화통신 발간	3,000		있음	◆◆◆◆ 금토 상임이사 ★★ ★ 재단 선임직 이사

2. 내 용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 정관」 제17조에 의하면,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사장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강원문화예술진흥지원금 관리규정」 제2조의 2,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강원문화예술진흥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한다)은 재단이사장이 매년 공모를 통하여 지원 사업 신청을 받아 재단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신청에 대한 지원여부 및 지원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 정관」 제7조 및 제20조에 의하면, 재단에는 이사장, 이사, 감사를 두며, 임원이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 「강원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문화재단 ☁☁☁☁☁에서는 이사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서면 의결 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의결에 회피 또는 제척하여야 했음에도, 다음과 같이 이사회 운영을 소홀하였다.

가. 이사회 서면의결 사항 차기 이사회 보고 소홀

강원문화재단에서는 이사회를 운영함에 있어 서면으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를 하여야 하나, 위 현황 “가”와 같이 2014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강원도♥♥♥♥♥♥규정 일부개정(안)을 서면으로 의결하였고, 2014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강원도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 확정 등 3건을 서면으로 의결하였음에도, 2014.07.24.에 개최한 2014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 시 2014년도 제1차 및 2차 임시이사회 서면의결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2014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와 2015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서면의결 사항 또한, 차기 이사회에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총 4회의 이사회 서면의결 사항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재단이사 운영단체 보조금 지원 절차 부적정

강원문화재단에서는 위 현황 “나”와 같이 강원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 지원금 확정을 위하여 2015.02.05.부터 2015.02.06.까지 이틀에 걸쳐 서면 의결한 2015년 제1차 임시 이사회 심의안건 중에 ◆◆◆◆◆ 등 2개 단체 5건 17,500천원은 강원문화재단 임원과 직무관련성이 있음에 따라, 이사회를 운영함에 있어 회피토록 하거나 제척하여야 했음에도, 2015년도 제1차 임시 이사회 의결에 이사 2명을 참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서면 이사회 의결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시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임원은 이사회 등 의결에 회피 또는 제척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신분상 조치 훈계 1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 ♪♪♪♪♪

【시행년도】 2015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계약직 근로계약 체결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계약직 신규채용 현황

성명	직급	채용일	사유	♥♥위원회 사전심의	연봉책정	근로계약	비고 (인사위 의안)
◆◆◆	♥ 급	2015.02.02.	◆◆◆국제음악제 운영실 결원 총원	2015.01.08.~01.09. (서면, ♥ 급)	2015.01.30.	2015.02.02.	2015-♥호

2. 내 용

「강원문화재단 계약직 인사관리규정」(2015.10.01. 폐지) 제7조에 의하면,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각 실의 장은 채용계획서에 의거 임용권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용권자는 계약직 직원의 채용과 관련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고, 「같은 규정」 제12조에 의하면, 계약직원의 보수는 ‘별표 21’와 같고,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 직원의

1) 계약직 직원 보수지급 한계액

(연봉액, 단위 : 원)

봉급액은 각 채용 구분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채용 구분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이사장이 결정하고, 「같은 규정」 제15조에 의하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문화재단 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강원문화재단 보수규정」 제5조에 의하면, 연봉은 연1회 연봉계약에 의하여 개인별로 결정하고, 연봉계약은 직원과 이사장 간에 체결하며, 계약서 원본은 2부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재단과 직원이 각각 보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문화재단에서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제 규정에 따른 채용절차를 준수하여야 했으나, 위 현황과 같이 최초 채용하는 계약직 연봉 책정 시 채용등급별 하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필요성과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사장이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2015.02.02. 채용한 계약직 ‘♥’ 급 ◆◆◆의 연봉월액에 대하여는 2015.01.30. 2,668천 원으로 책정하였음에도, 2015.01.06. 채용계획 수립 시 연봉월액 3,000천 원으로 예산 검토하였다는 사유로 연봉월액 재 책정절차 없이 2015.01.30. 기 책정한 연봉월액 2,668천 원보다 332천 원 증가한 3,000천 원으로 2015.02.02.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계약직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책정된 연봉액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신분상 조치 훈계 3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 ♣♣♣♣♣, ◆◆◆국제음악제운영실

【시행년도】 2014~2015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사무관리비(201-01) 집행 부적정 현황

세부사업	지출일	지출처	지출건명	지출금액 (천원)	비고
공연예술종합연습공간	2015.06.30.	㈜♣♣♣	공유기 및 IP전화기 구입	520	자산취득비
“	2015.08.05.	♣♣♣♣♣선반	강원공연예술연습공간 앵글선반 제작 설치비	1,012	“

나. 공공운영비(201-02) 집행 부적정 현황

세부사업	지출일	지출처	지출건명	지출금액 (천원)	비고
공연예술종합연습공간	2015.06.26.	♣♣공사	강원공연예술공간 칸막이 공사	605	자산취득비

다. 행사운영비(201-03) 집행 부적정 현황

구분	건수	지출금액(천원)	비고
계	35	67,652	
업무추진비	3	624	식비
일반보상금	31	66,248	시상금 1,454 숙박비 120, 출연료 64,000, 항공료 674
기타	1	780	숙박비

라. 행사실비보상금(301-09) 집행 부적정 현황

세부사업	지출일	지출처	지출건명	지출금액 (천원)	대상 (명)	비고
♣♣♣♣ 음악제	2015.11.04.	♣♣투어	행정감독(대행) 해외출장 항공료	1,005	1	민간인 국 외여비

마. 예산집행 품의 생략 및 지역개발채권 미 소화

세부사업	지출일	과목	지출처	지출건명	지출금액 (천원)	비고
◆◆◆국제 음악제운영	2014.07.07.	203-03	㈜♀♀	제11회 ◆◆◆국제음악제 ♀♀간담회	646	예산집행 품의 생략
	2014.07.10.	201-03	◎◎◎◎	제11회 ◆◆◆국제음악제 후원유치용 인쇄물(1차) 제작	2,952	예산집행 품의 생략 및 지역개발채권 미소화

2.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Ⅲ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1-8. 예산집행 사전협의제 운영에 의하면, 회계부서에서는 사전 협의를 하는 경우 당해 경비 집행의 적법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집행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1. 사무관리비(201-01)에 의하면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에 집행하며, 2-2. 공공운영비(201-02)에 의하면,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에 집행하고, 2-3. 행사운영비(201-03)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임차료, 강사료, 식비 등에 집행하며, 8-4. 행사실비보상금(301-09)에는 국가(지방)단위 행사참석 실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는 본 과목에서 지급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재무회계규정」 제146조에 따르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 지방재정법 2. 지방세법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4. 지방계약법령 5. 강원도 재무회계규칙 6. 강원도물품관리조례 등의 관계조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 재무회계규칙」 제21조에 의하면,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일상경비 교부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5조 [별표 1]의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기준에 의하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의 경우 대금 청구액의 2.5/100를,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은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천 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버리고 5천 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문화재단에서는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재단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했음에도, 다음과 같이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가. 사무관리비(201-01) 집행 부적정

재단에서는 위 현황 “가”와 같이 사무관리비(201-01)를 집행함에 있어, 당해 경비 집행의 적법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집행하여야 했음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에서 집행하여야 할 자산취득성 경비 2건 1,532천 원을 사무관리비(201-01)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나. 공공운영비(201-02) 집행 부적정

재단에서는 위 현황 “나”와 같이 공공운영비(201-02)를 집행함에 있어, 당해 경비 집행의 적법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집행하여야 했음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에서 집행하여야 할 자산취득성 경비 1건 605천 원을 공공운영비(201-02)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다. 행사운영비(201-03) 집행 부적정

재단에서는 위 현황 “다”와 같이 행사운영비(201-03)를 집행함에 있어, 당해 경비 집행의 적법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집행하여야 했음에도, 업무추진비(203목)에서 집행하여야 할 업무추진비성 경비 3건 624천 원, 일반보상금(301목)에서 집행하여야 할 일반보상금성 경비 31건 66,248천 원, 그리고 행사운영비(201-03)에서 집행할 수 없는 숙박비 780천 원 등 총 35건 67,652천 원을 행사운영비(201-03)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라. 행사실비보상금(301-09) 집행 부적정

재단에서는 위 현황 “라”와 같이 행사실비보상금(301-09)를 집행함에 있어, 당해 경비 집행의 적법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집행하여야 했음에도, 민간인국외여비(301-07)에서 집행하여야 할 민간인 국외여비 1건 1,005천 원을 행사실비보상금(301-09)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마. 예산집행 품의 생략 및 지역개발채권 미 소화

재단에서는 위 현황 “마”와 같이 ◆◆◆국제음악제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집행 품의를 하고,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은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도록 하여야 했음에도, 2014.07.07. 제11회 ◆◆◆ 국제음악제 기자간담회 경비 646천 원을 시책업무추진비(203-03)에서 집행하면서 예산집행 품의를 부당하게 생략하고 집행하였으며, 또한 2014.07.10. 제11회 ◆◆◆ 국제음악제 후원유치용 인쇄물(1차) 제작 용역 경비 2,952,400원을 행사운영비(201-03)에서 집행하면서 예산집행 품의를 부당하게 생략하였으며, 지역개발채권 40천 원을 소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회계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세출예산을 집행하시고, 아울러, 당해 경비의 적법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신분상 조치 훈계 2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 ◆◆◆국제음악제운영실

【시행년도】 2013~2015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용역계약 및 이행 등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용역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용역명	계약일 (계약일)	계약방법 (근거조항)	예정 가격	계약 금액	계약상대자	착수신고 /완료통지	검사일	지출일
2014년	제11회 ◆◆◆국제 음악제 방송프로그램	'14.06.27 ('14.06.28)	1인 수의 (미기재)	미작성	60,000	★★★★★ (☆☆☆)	미제출	'14.10.17	'14.10.23
2015년	제12회 ◆◆◆국제 음악제 방송제작	'15.05.29 (-)	1인 수의 (미기재)	미작성	60,000	★★★★★ (☆☆☆)	미제출	미실시	'15.10.14

2. 내 용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에서는 용역 등 계약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계약법령」 및 「강원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²⁾등의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다음과 같이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가. 용역계약업무 등 부적정

① 계약방법 부적정

2) 「강원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 제146조에서는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지방세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계약법령」 및 「강원도 재무회계규칙·강원도 물품관리조례」 등의 관계조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은 위 현황에서와 같이 2014년 제11회 ◆◆◆국제음악제 방송프로그램 제작·송출(이하 “2014년 용역사업”이라 한다)용역 및 2015년 제12회 ◆◆◆국제음악제 방송제작·송출(이하 “2015년 용역사업”이라 한다)용역은 공고하여 입찰에 부쳐야 하는데도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과 부적정하게 수의 계약을 하였다.

② 예정가격 미작성

「지방계약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고,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 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두어야 하고,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4. 나. 세부 평가 방법에서는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거래실례 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은 위 현황에서와 같이 2014년 용역사업과

2015년 용역사업을 수의계약하면서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위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가격협상 장소에 갖추어 두고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해 예정가격 이하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계약금액을 60,000천원으로 결정하였다.

나. 용역계약의 이행 등 부적정

「지방계약법」 제17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고,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제5절 및 제8절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고,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착수신고서³⁾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에서는 2014년 및 2015년 용역사업과 관

3) 착수신고서 포함 서류 :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4)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련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착수신고서와 서면에 의한 용역완료 통지 등을 제출받지 않았고, 2015년 용역사업은 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대가를 지급하는 등 용역 계약의 이행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처 분 요 구】

-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지 면밀히 확인하여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수의계약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서면에 의한 수의 계약을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이 비치되어 있는 가격협상장소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해 계약금액을 결정하시고,
- 계약상대자로부터 착수신고서와 서면에 의한 용역완료 통지 등을 제출받고, 검사에 합격한 때에 대가를 지급하는 등 용역계약 및 이행 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 ◆◆◆국제음악제운영실

【시행년도】 2013~2015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계약심사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계약심사 미이행 현황(2014.1월 이후)

(단위:천원)

순번	구분	사업명	계약일자	기초금액	계약금액
계	2건			71,000	
1	물품	제11회 ◆◆◆국제음악제 인쇄물 제작	2014.06.10	37,000	24,232
2	물품	제11회 ◆◆◆국제음악제 광고물 제작	2014.06.10	34,000	19,550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1절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 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과 제74조 제8항에 따라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강원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심사란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하고, 심사부서란 강원도의 계약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관을 말하고,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도 본청의 실·국·본부, 도의회 사무처, 나. 도의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다. 도 지방공기업, 라. 도 출연기관(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한다), 마. 시·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지방 공기업 및 50퍼센트 이상 출연기관 포함⁴⁾)

또한 「같은 규칙」 제3조 제2항의 [별표]에서는 계약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를 공사(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공사 등)는 추정금액 5억 원 이상(단일공사 3억 원 이상)으로, 건설기술용역은 추정금액 2억 원 이상으로, 학술연구용역 및 일반용역은 추정금액 1억 원 이상으로, 물품 제조·구매는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은 사업 발주 전에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심사 결과를 철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위 현황에서와 같이 계약심사 대상사업 2건 71,000천 원에 대해 계약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계약심사 절차가 이행된 사업에 한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하시는 등 계약심사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4) 행정자치부 재정고(<http://lofin.moi.go.k>)의 지방출자·출연기관 현황에 의하면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의 자치단체 출연 기본재산은 60.5%로 계약심사를 받아야 하는 발주부서에 해당함

【일련번호 : 6】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 ☸☸☸☸☸

【시행년도】 2013~2015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사무의 인계 등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지방재정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하며, 출납원은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및 물품 출납원 등으로 구분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소관현금의 출납에 관하여 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지출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97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강원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 제46조, 제47조 및 제146조에서는 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는 인계 전일으로써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 하여야 하고, 인계자는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지방세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계약법령」 및 「강원도 재무회계규칙·강원도 물품관리조례」 등의 관계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2013.02.21.자 및 2014.09.01.자로 인사 발령되었음에도 인계자(전임자)가 인계의 절차를 거쳐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한 사실이 없는 등 출납사무의 인계인수를 소홀히 하였으며,

또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2013년, 2014년 각 회계연도 경과 후 1월 이내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지 않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처 분 요 구】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변경 시 5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완료하고, 회계연도 경과 후 1월 이내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사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 ◆◆◆국제음악제운영실

【시행년도】 2013~2015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불용품의 폐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불용품 폐기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불용품명	수량	취득일자	취득금액	불용일자	처분계획	처분결과 ⁵⁾
계	3건	3					
1	복합기	1	2004.03.19	170	2012.11.26	폐기	사무기기 도·소매 업체에서 무상수거
2	복사기	1	2005.12.06	6,000			
3	컬러프린터	1	2006.12.15	1,600			

2. 내 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5) 2013.3.20. 불용물품 처분을 위한 무상수거 인수인계서 작성(인수자 : 춘천사무기)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으며,

「강원도 물품관리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하며,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강원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 제113조 및 제146조에서는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불용 및 처분이 결정된 때에는 매각, 해체활용,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지방세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계약법령」 및 「강원도 재무회계규칙·강원도 물품관리조례」 등의 관계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에서는 불용품 폐기 시에는 「강원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별지 제5호 서식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하는데도 위 현황에서와 같이 복합기 등 총 3건의 물품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음에도 관련법령에 따라 소각 또는 폐기하지 않고 ☆☆사무기에 무상 인계하였다.

【처 분 요 구】

- 불용품의 폐기는 관련법령에 따라 소각 또는 폐기하고, 무상으로 인계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신분상 조치 훈계 1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 ♣♣♣♣♣

【시행년도】 2014~2015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기금운용계획 미 수립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기금 현황

(단위 : 원)

예치은행	금액	계좌번호	이율	예치기간	
합 계	21,751,000,000			14구좌	
♣♣ 은행	소계	16,448,258,869		8구좌	
		1,605,258,869	♣♣-◎◎-★★★★	2.07	'15.03.02.~
		1,800,000,000	♣♣-◎◎-★★★★	1.61	'15.07.14.~
		7,422,000,000	♣♣-◎◎-★★★★	2.24	'15.01.07.~
		1,500,000,000	♣♣-♣♣-★★★★	2.25	'14.12.08.~
		500,000,000	♣♣-♣♣-★★★★	2.30	'14.12.23.~
		251,000,000	♣♣-♣♣-★★★★	2.30	'14.12.29.~
		2,670,000,000	♣♣-♣♣-★★★★	연변동(공시 이율 3.25%)	'15.06.01.~ (가입기간 : 10년)
	700,000,000	★★★★★	월변동(공시 이율 3.3%)	'15.09.16.~ (가입기간 : 5년)	

예치은행		금액	계좌번호	이 율	예치기간
씨씨은행	소계	4,802,741,131			5구좌
		1,000,000,000	♣♣-♀♀-★★★★	2.15	'15.01.16.~
		500,000,000	♣♣-♀♀-★★★★	2.10	'15.01.27.~
		2,370,483,932	♣♣-♀♀-★★★★	2.25	'14.12.08.~
		257,199	♣♣-♀♀-★★★★	1.53	'15.06.30.~
		932,000,000	♣♣-♀♀-★★★★	월변동(공시 이율 3.2%)	'15.06.30.~ (가입기간 : 10년)
씨씨은행	소계	500,000,000			1구좌
		500,000,000	♣♣-♀♀-★★★★	1.91	'15.03.27.~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⁶⁾에 따라 기금운용계획⁷⁾을 작성할 때에는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고, 지출계획은 세출예산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운용 관리규정」⁸⁾ 제3조부터 제5조에 따르면 적립기금은 적립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운용기금은 도내 문화예술활동사업, 전통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국제교류사업, 기타 도 문화예술진흥에 관련하여 재단 이사회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행정안전부예규 제24호(2008.3.11., 제정]

7) -운용총칙 :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

-자금운용계획 :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

8) [2000.3.17. 제정] 시행

또한, 재단의 사무처장은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강원문화재단은 2015. 11월 현재 기금 21,751백만 원이 적립되어 있고, 적립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704백만 원(2014 결산자료)을 운용하면서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운용 관리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이나 도지사의 승인 없이 기금을 관리·집행하는 등 기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처 분 요 구】

-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운용 관리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재단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 ♡♡♡♡♡

【시행년도】 2014~2015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목】 미등록 회계공인 사용 및 공인대장 작성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직인대장 등록 직인현황('15. 11. 현재)

직 인 명	새긴날	등록일	공고일	비고(형태)
계	12개			
재단법인강원문화재단이사장인	'00.02.23.	'00.02.23.	'00.02.23.	23x23mm
재단법인강원문화재단경리관인	'00.07.07.	'00.07.07.	'00.07.07.	20x20mm
재단법인강원문화재단징수관인	'00.07.07.	'00.07.07.	'00.07.07.	20x20mm
재단법인강원문화재단 ♡♡기금운영관인	'00.07.07.	'00.07.07.	'00.07.07.	20x20mm
재단법인강원문화재단지출원인	'00.07.07.	'00.07.07.	'00.07.07.	18x18mm
재단법인강원문화재단 ♡♡기금출납원인	'00.07.07.	'00.07.07.	'00.07.07.	18x18mm
재단법인강원문화재단 ♡♡위원회위원장인	'10.09.28.	'10.09.28.	'10.09.28.	24x24mm
강원문화재♡♡♡음악제 운영실지출원인	'03.12.26.	'03.12.26.	'03.12.26.	18x18mm
◆◆◆국제음악제추진위원장인	'03.12.26.	'03.12.26.	'03.12.26.	24x24mm
강원♡♡♡♡♡장인	'01.07.07.	'01.07.07.	'01.07.07.	27x27mm
재단법인강원♡♡♡♡♡장인	'01.07.07.	'01.07.07.	'01.07.07.	지름17mm
강원♡♡♡♡♡지출원인	'01.07.07.	'01.07.07.	'01.07.07.	18x18mm

나. 공금계좌현황('15. 11. 현재)

공금계좌수	등록 회계공인 사용	미등록 회계공인 사용	비고
92계좌	81	11	※ 법인인감 사용

2. 내 용

「강원문화재단 공인규칙」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육성기금운용관, 육성기금출납원, 퇴직기금운용관, 지출원, 물품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하며, 공인을 신조·개각하였을 때에는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필요할 때마다 정리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을 인영부에 보존하여야 하고, 공인을 신조각인하거나 폐인 하였을 때에는 문서로 각 보조기관 및 유관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강원문화재단에서는 이사장, 회계관계직원의 공인 등 모든 필요한 공인에 대하여는 공인대장에 등록한 후 등록사유 등을 명기하여 공고한 후 사용하여야 함에도, 위 현황 ‘나’와 같이 총 92개 공금 계좌 중 81개는 등록된 회계관직 공인을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11개 계좌(육성기금 적립)는 미등록된 이사장 공인을 아무런 근거 없이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또한 같은 규칙에 따른 공인대장 및 인영부를 기록하지 않는 등 회계관직 공인사용 및 공인대장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강원문화재단 공인규칙」에 따라 공금관리에 사용되는 공인은 등록된 회계공인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등록된 공인은 공인대장의 작성과 인영은 인영부에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 ♣♣♣♣♣

【시행년도】 2014~2015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관외출장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내 용

「강원문화재단직원 복무규정」 제5조, 제13조에 따르면 모든 직원은 법령과 재단의 규정을 준수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직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출장하는 직원은 당해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고,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장 용무를 마치고 복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술이나 문서로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강원문화재단에서는 2014~2015년까지 ★★처장 ◇◇◇ 등 18명은 35회의 관외출장 명령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이후, 출장기간이 변경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출장명령 변경이나 취소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처 분 요 구】

-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관외출장은 출장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출장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출장기간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명령을, 출장이 불필요한 때에는 출장취소 명령 조치를 하는 등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 ☸☸☸☸☸

【시행년도】 2013~2015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회계결산 시기 부적정 및 관련 규정 개정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강원문화재단 회계 결산 현황

실과소	2012년			2013년			2014년		
	사무처 제출일	이사회 의결일	道 제출일	사무처 제출일	이사회 의결일	道 제출일	사무처 제출일	이사회 의결일	道 제출일
☸☸☸☸☸	'13.3.20	'13.7.20	'13.7.23	'14.7.21	'14.7.24	'14.7.28	'15.3.31	'15.7.23	'15.7.28
☸☸☸☸☸센터	'13.3.20	'13.7.20	'13.7.23	'14.7.21	'14.7.24	'14.7.28	2014년부터 ★★★팀 변경		
◆◆◆ 국제음악제 운영실	'13.3.20	'13.7.20	'13.7.23	'14.4.12	'14.7.24	'14.7.28	'15.3.31	'15.7.23	'15.7.28
♥♥♥♥♥♥♥	'13.3.19	'13.7.20	'13.7.23	'14.4.12	'14.7.24	'14.7.28	'15.3.20	'15.7.23	'15.7.28

나. 강원문화재단 회계 관련 규정

규정명	규정 내용	
	2015.05.25. 개정 이전	2015.05.25. 개정
강원문화재단 정관 (제정 1999.12.27.) (개정 15회, 최종개정 2015.05.29.)	제29조(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는 사업실적과 시 행령 제19조제2항에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5.05.29.)
강원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 (제정 2000.03.17.) (개정 6회, 최종개정 2013.12.26.)	2011.07.04. 개정 이전 제28조(결산보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결과는 당해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이 강원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1.07.04. 개정 제63조(결산보고) 매 회계연도마다 당해 연도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6월 이내 에 감사의 의견을 붙여 이사회의 의결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내 용

가. 강원문화재단 회계결산 시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강원문화재단 정관」 제29조에 따르면 강원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강원문화재단(☞☞☞☞☞)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 까지 재단 회계결산을 함에 있어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위 현황 '가'와 같이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이 지난 후에 이사회 의결을 받고 道에 제출하는 등 재단 회계결산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나. 강원문화재단 회계관련 규정 개정 부적정 및 관리 소홀

「강원문화재단 정관」 제29조에 의하면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강원문화재단에 대한 강원도 재무감사 기간 중(2015.11.23.~11.27.) 강원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을 살펴본바, 2011.07.04. 재단 재무회계규정을 아무런 근거 없이 개정(결산보고 기간을 2월 이내에서 6월 이내로)하여 위 내용 '가'와 같이 회계결산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⁹⁾」이 2014.03.24.

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결산)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정·시행됨에 따라 재단 정관 및 관련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위 현황 ‘나’와 같이 2015.05.25. 재단 정관은 개정하였으나, 재단 재무회계규정은 개정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소홀히 하였다.

【처 분 요 구】

- 강원문화재단에서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회계결산을 이행 하시고, 강원문화재단 소관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등 개정근거를 마련하여 정관 및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 강원♥♥♥♥♥♥♥♥

【시행년도】 2013~2015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세출예산 과목외 사용현황

사업명	지출과목	구입내역	지출일자	지출금액 (천원)	적정과목	비고
계		3대		13,070		
행정운영지원	자산취득비 (405-01)	복사기 임대료	2011.7월~ 2013.6월 (24개월)	11,640	사무관리비 (201-01)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사무관리비 (201-01)	☆☆☆발굴조사 물품구입	2014.06.12	65	공공운영비 (201-02)	
행정운영지원	사무관리비 (201-01)	컨테이너 폐기물처리비	2014.01.23	450	공공운영비 (201-02)	
	기관운영업무 업무추진비 (203-01)	강원문화재단 업무보고 및 전직원 간담회	2014.04.16	400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3-04)	
		직원격려 간담회	2014.07.16	515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3-04)	

2. 내 용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한다)의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 정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르면, 재단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며, 다만, 경영성과와 수지상태 파악에 어려움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강원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 제146조에 의하면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강원도 재무회계규칙 등의 관계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안행정부 훈령48호, 2014. 7. 30) 제6조 [별표12]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재)강원문화재단부설 강원♥♥♥♥♥♥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사무관리비(201-01)로 집행해야 할 복사기 임대료 11,640천 원을 자산취득비(405-01)에서 공공운영비(201-02)로 집행해야 할 자동차 유류구입 65천 원과 폐기물처리비 450천 원을 사무관리비(201-01)로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로 집행해야 할 직원간담회비 2건 915천 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에서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 하였다.

【처 분 요 구】

- 세출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과목 구분에 따라 집행범위 내에서 지출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대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 강원♥♥♥♥♥♥♥♥

【시행년도】 2014~2015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연가일수 산정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연가일수 산정 현황

성명	직위	① 2014년					② 2015년			
		법정 연가일	가산일	총연가 일수	총사용 일수	초과 일수	법정 연가일	가산일	총 연가일수	기사용 일수
◆◆◆	◆◆◆◆ 팀장	18일	1일	19일	24일 7시간	5일	18일	1일	19일	5일

※ 2015년 가산일 1일은 2014년도 병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 가산일수
2015년 기사용 일수는 2014년도 연가 초과사용 일수를 익년도 연가일수에서 제외한 일수 임.

2. 내 용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제25조 및 「강원문화재단직원 복무규정」 제21조, 제30조에 의하면 해당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직원으로서 병가를 얻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연가일수 1일을 가산하며, 위 조례 및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강원문화재단부설 강원♥♥♥♥♥♥에서는 2015년 강원♥♥♥♥♥♥ ◆◆◆◆팀장으로 근무하는 ◆◆◆에 대한 연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현황 “①”과 같이 2014년도에 연가일수 19일에서 5일을 초과하여 연가를 사용한 ◆◆◆에 대하여 다음 해에 연가일수를 산정할 때에는 관련규정 제30조에 의하여 초과 사용한 5일을 결근처리하고 동 규정 제21조에 따라 병가미사용에 대한 연가일수 1일을 가산하지 말았어야 했으나, 위 현황 “②”와 같이 2015년 연가일수 산정 시 병가미활용에 따른 연가가산 1일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등 연가일수 책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처 분 요 구】

- 연가가산일 산정 시 관련규정 연찬 및 대상자에 대한 근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와 같은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가일수 산정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 강원♥♥♥♥♥♥♥♥

【시행년도】 2015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문화재발굴 소장유물 점검 및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강원♥♥♥♥♥♥♥♥ 유물보관 관리 사무실 현황

가. 소재지 : ◆◆면 ◇◇로 ♣♣(◆◆리 917-1) ♣♣빌딩 ♣~♣층

나. 임차사용 : 2006년 1월부터 / 보증금 3억 원, 임대료 월 330만 원

다. 운영현황 : 강원♥♥♥♥♥♥♥♥ ♣♣ 1·2팀 14명 근무

- 매장문화재 조사·연구·복원 및 국가귀속 유물 등 보관 관리

구 분	면 적(m ²)	이용현황	비 고
♥층	213.79	• ♥♥ 1·2팀 사무실	보고서 발간 및 조사 연구
♥층	213.79	• 유물 복원실, 유물창고	유물세척, 복원 등
♥층	206.74	• 유물수장고	국가귀속 유물 보관

2. 내 용

(재)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는 소장된 유물의 보관·관리와 취급에 있어 「유물관리규정」(2014.3.11. 문화재청 훈령) 및 「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 유물관리 규정」에 의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다음과 같이 유물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가. 보관유물 확인점검 보고 미이행

「유물관리규정」(2014.3.11. 문화재청 훈령) 제8조 및 「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 유물관리 규정」 제11조에 의하면 각 기관의 장 또는 유물관리담당자는 매년 정기적¹⁰⁾으로 유물수량 및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물현황을 작성하여 각 기관의 장(강원♥♥♥♥♥♥ ★★실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강원문화재단부설 강원♥♥♥♥♥♥(★★1팀)에서는 국가귀속유물 이관 시 이관현황을 보고한다는 이유로 정기적으로 소장유물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소장유물에 대한 확인·점검을 소홀히 하였다.

나. 보관유물 관리 소홀

「유물관리규정」(2014.3.11. 문화재청 훈령) 제5조 및 「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 유물관리 규정」 제17조에 의하면 유물창고(수장고) 열쇠는 2벌 이상을 비치하되 1벌은 유물출납공무원(유물관리담당자)이 안전관리금고에 보관하고 다른 1벌은 각 기관의장(★★실장)과 관계직원(★★★팀장)이 연대봉인하여 ★★팀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유물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하면 소장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유물종류별

10) 「유물관리규정」에서는 매년 1회(5월), 「강원♥♥♥♥♥♥ 유물관리 규정」에서는 매년 6월말, 12월말 정기점검 실시토록 규정

일반관리수칙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하여 유물창고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강원문화재단에 대한 재무감사 기간 중(2015.11.23.~11.27.) 강원♥♥♥♥♥♥에서 관리하는 유물창고(수장고) 현지 확인결과 봉인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유물창고(수장고) 열쇠 1벌을 봉인하지 않은 채 강원♥♥♥♥♥♥ ★★☆☆팀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으며, 유물창고(수장고)에 작성·게시해야 할 일반관리수칙을 작성하지 않는 등 소장유물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처 분 요 구】

- 강원♥♥♥♥♥♥에서는 소장유물을 관리함에 있어 정기적으로 유물현황을 점검하여 유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연구실장에게 보고하시고,
- 소장유물을 보관하는 유물창고(수장고) 열쇠는 규정에서 정한대로 1벌은 반드시 ★★실장과 ★★☆☆팀장이 연대봉인 한 후 ★★☆☆팀에서 보관·관리하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일반관리수칙을 제작하여 유물창고(수장고)에 게시하는 등 소장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5】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 강원♥♥♥♥♥♥♥♥

【시행년도】 2013~2015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수탁용역사업에 대한 정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수탁용역사업 총괄 현황(2013.12. ~ 2015.11월)

(단위: 원)

사업 년도	수탁용역사업명	발주기관	계약금액 (부가세포함)	예산편성내역	예산집행내역	예산집행잔액 (정산금액)	비 고
	합 계	51건	1,667,625,680	1,667,625,680	1,622,675,743	44,958,000	
2013	○○시 ○○○읍 주택신축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	120,000,00	120,000,000	83,545,000	36,455,000	
2014	매장문화재지표 조사용역	♣♣♣♣ 외 27건	1,336,478,000	1,336,478,000	1,334,635,000	1,843,000	
2015	○천하천재해에 방사업 문화재 지표조사용역	○○○○○외 21건	211,147,680	211,147,680	204,495,743	6,660,000	

※ 진행중이거나 중지된 수탁용역사업은 제외

나. 수탁용역사업 정산 부적정 현황

(단위: 원)

사업 년도	수탁용역사업명	발주기관	계약금액 (부가세포함)	예산편성내역	예산집행내역	예산집행잔액 (미정산금액)	비 고
	합 계	1건	158,500,000	158,500,000	170,000,000	11,500,000	
2014	2014년 ○○○○ 발굴조사 용역	☆☆☆☆	158,500,000	158,500,000	170,000,000	11,500,000	

2. 내 용

「강원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 제146조에 의하면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의 관계 조항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강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¹¹⁾에 따라 2014.5.8. ◆◆군에서 발주한 “2014 ◆◆◆ 발굴조사 용역계약”을 2014.6.2.부터 2014.7.31.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계약금 132,000천 원에 1차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과 관련한 ◆◆군의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발굴조사와 관련하여 인·허가 및 면적 증·감 등 각종 제반사항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감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 하여야 하고, 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비 정산방법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부분은 실제인원 투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단장의 확인이 되는 서류 및 출장신청서사본·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에 대한 실 정산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1차 계약이후 강원♥♥♥♥♥♥♥♥에서는 발굴면적 및 용역기간 증가의 사유로 계약금 26,500천 원을 증액하여 2014.7.23.일 추가 2차 변경계약(2014.8.31.까지)을 체결하였고, 2차 변경계약이후 다량의 유구¹²⁾가 확인되고 중첩양상¹³⁾이 심하여 잔여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는데 무리가 있어 계약금액 변경 없이 2014.8.22.일 ◆◆군과 계약기간을 31일 연장(2014.9.30.일까지)하는 3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강원♥♥♥♥♥♥♥♥에서는 ◆◆군과 2번의 변경계약을 하면서 3차 변경계약 시 계약금액의 변경이 없이 31일의 용역기간 연장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조사요원 현장조사가 16일 더 투입되

11)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가~파(생략), 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12) 유구란 : 옛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건축양식,유물,유골 등)

13) 중첩양상이란 : 확인된 건물지가 시기별로 여러번 중복된 상태를 말함.

었고, 그에 따른 인건비, 경비, 제경비, 학술료, 부가가치세가 당초 계약금액보다 11,500천 원이 증가된 비용을 ◆◆군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청구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사업의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강원♥♥♥♥♥♥에서는 수탁용역사업 용역계약(변경계약 포함)시 발주처(청)와의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른 인건비 및 이에 따른 경비, 제경비, 학술료, 부가가치세 등 실제 소요된 비용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6】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 강원♥♥♥♥♥♥♥♥

【시행년도】 2012~2014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목】 수탁용역사업 미수금에 대한 결손처분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수탁용역사업 미수금에 대한 결손처분 미이행 현황

(단위: 원)

사업연도	사업명	계약자	계약일자	계약금액	사업기간	입금액	미수금	비고
	합 계	6건		302,065,000		157,435,000	144,630,000	
2001	☞☞ 객사문 보수공사에 따른 유구하부구조 확인조사	㈜★★★★	2001.07.20	5,500,000	2001.07.20. ~ 2001.08.10	2,750,000	2,750,000	소 별 시 효 완성
2002	☞☞ ☞☞리 주차장신축예정부지내 유적 시굴조사	☞☞☞	2002.12.16	2,9685,000	2002.12.16. ~ 2003.01.16	19,685,000	10,000,000	"
2003	☞☞ ☞☞3리 시굴조사	★★★★	2003.11.27	40,880,000	2003.11.27. ~ 2003.12.31	20,000,000	20,880,000	"
2004	☆☆ ☆☆아파트 사업부지 지표조사	☞☞☞	2004.11.05	6,000,000	2004.11.05. ~ 2004.11.15	-	6,000,000	"
2005	☆☆ ☆☆동 근린생활시설부지 시굴조사	★★★★	2005.03.15	19,000,000	2005.03.21. ~ 2005.04.08	10,000,000	1,000,000	"
			(변경 05.04.07)	-8,000,000				
2007	★★ ★★리 가족위생처리장부지내 유적문화재 발굴조사	☞☞산업	2007.03.02	209,000,000	2007.03.19. ~ 2007.07.10	105,000,000	104,000,000	"
			(변경 07.04.16)					

2. 내 용

「강원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 제5조 및 제6조, 제31조부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강원도♥♥♥♥♥♥(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회계는 연구소의 재무 상태와 사업성과 및 수지상황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회계 거래를 발생한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고, 연구소에 서 부과하는 임대료와 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금액에 대해 납부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체납처분(압류)할 수 있으며,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 될 때,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징수권의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가 소멸된 때,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 받게 된 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강원♥♥♥♥♥♥에서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수행한 6건 302,065천 원의 수탁용역사업 미수금 144,630천 원에 대해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않는 등 징수권의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가 소멸 되었는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결손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강원♥♥♥♥♥♥에서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 ♠♠♠ 보수공사에 따른 유구하부구조확인조서” 외 5건에 대한 수탁용역사업 미수금 144,630천 원에 대해 조속히 결손 처분하여 결산보고서상의 미수금 계정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